폭 력

및 무력사용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단
北京市建國門外大街9號齊家園外交公寓B2
우편번호: 100600
전화: +86 10 8532 3290
팩스: +86 10 6532 0633
이메일: beijing.bej@icrc.org
웹사이트: www.icrc.org
©국제적십자위원회, 2009년5월

표지 사진: Fabrice Coffrini/Reuters

목차

1. 법적 체계 7
   1.1. 국제공법 및 국내 입법 7
   1.2. 무력충돌법과 인권법 8

2.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15
   2.1. 집회 및 시위 15
   2.2. 내부소요 및 긴장사태 18
   2.3. 비상사태 20

3. 무력충돌 25
   3.1. 비국제적 무력충돌 26
   3.2. 국제적 무력충돌 30
   3.3. 국제화된 무력충돌 33

4. 평화지원 활동 35
   4.1. 정의 35
   4.2. 적용 법률 35
   4.3. 실제 적용 37

5. 특수한 문제들 39
   5.1. 법의 집행 39
   5.2. 무력 및 화기의 사용과 적대행위 41
   5.3. 체포 및 억류 46

6. 국제적십자위원회 51
   6.1. 주요 내용 51
   6.2. 실제 적용 52

7. 참고 문헌 57
   7.1. 관련 ICRC 출판물 57
   7.2. 주요 약어 및 용어 57

Jordao Henrique/AP

서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민간당국의 책임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특수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은 민간 경찰 및/또는 헌병과 같은 준군사 단체의 의무이다. 국가 군대의 일반적인 역할은 외부의 위협(국제적인 무력충돌)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수호하고, 국내 무력충돌 (비국제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軍)은 국내 소요 및 긴장 사태와 같이 폭력의 강도가 훨씬 낮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당국을 지원할 수 있다.

소요사태에서도 고도의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국가적 행위자들도 비교적 조직이 잘 되어 있을 수 있다. 소요 및 긴장사태와 무력충돌을 구분하는 기준은 때로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사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만 상황을 적절히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폭력의 강도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소요/긴장사태와 무력충돌의 구분은 단순한 이론적인 연습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어떠한 상황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결정되고, 동 규칙들에 근거한 보호 조치의 상당 부분이 법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폭력사태에 관련된 지휘관 및 희생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책자는 각각의 법적인 상황과 개념정의, 적용되는 법률, 실제 적용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의 역할에 대해 기술한다. 본 책자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명확한 법률용어로 제시된다. 폭력의 증대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것이 지휘관의 사명이자 법적인 책무이지만 본 책자는 전술적인 고려사항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책자는 발생 가능한 상황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i)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ii) 무력충돌, iii) 평화지원활동.

Gil Cohen Magen/Reuters

1. 법적 체계

모든 군사 또는 경찰 활동은 그 명칭이나 관계된 병력 (兵力)에 상관없이 국제법 (주로 무력충돌법 및/또는 인권법)과 국내 입법에 따라 설정된 법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1. 국제공법 및 국내 입법

국제공법은 **국가간**, 국제기구간 또는 국가 대 국제기구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국제사회의 원활한 유지에 기여한다. 무력충돌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과 – 자위 (自衛) 또는 집단안보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간 관계에 있어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을 의미함 – 즉,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본 문서의 3장 참고)이 구분된다. 후자는 무력에 호소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다.

국제법 또는 이러한 법적 체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특히, 무력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국가**는 – 국민, 영토 및 통치조직을 갖춘 주권의 주체로 정의되는 –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 중요한 주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공무원들의 공적인 권한에 따른 행위 또는 사실상의 대리인이 취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반정부 집단 및 해방운동** 역시 국제법, 특히, 무력충돌법에 따른 책무를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는 **국제법의 근거**가 되는 법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국제협약 또는 조약;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법치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국내 입법은 국가가 갖는 국제적인 책무와 합치하여야 한다. 각국의 국내 입법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조약의 효력을 결정한다. 다수의 국가는 조약이 국내법으로 기능하도록 간단히 허용만 하면 되지만 일부 국가는 조약이 자국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약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거나 때로 조약 내용을 국내 이행법률로 제정해야 하기도 한다.

1.2. 무력충돌법과 인권법

무력충돌법과 인권법은 **상호보완적**이다. 이들은 비록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서이기는 하나 모두 개인의 생명, 완전성 및 존엄성의 보호를 추구한다. 또한, 이들은 무력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무력충돌법은 무력충돌시 인도적인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해 법령화되어 발전되어왔다. 무력충돌법은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고, 적대행위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법**은 평시와 전시를 포함하여 항상 개인을 보호하고, 모든 이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가들의 자의적인 행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조항이 국내 입법을 통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 관련 법령집은 정부가 심각한 공공위협에 직면한 경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일부 권리의 **감손**을 허용하고 있다 (아래 참고). 그러나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절대로 감손할 수 없는 기본권인 "인권의 핵심부분 (hard core)"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 중에는 생명권이 있다 (2.3.2장 참고). 무력충돌법은 처음부터 극단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법에서는 그 어떠한 권리의 감손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는 군사적 필요와 인도주의적 목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1.2.1. 무력충돌법

무력충돌법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무력충돌의 악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규칙들로 구성된다. 무력충돌법의 관습적 기원을 살펴보면 무력충돌법은 1864년 이후 조약으로 명문화되었다. 무력충돌법은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수단 및 방법을 제한한다**. 무력충돌법은 "국제인도법" 또는 "전쟁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1949년 개정 및 추가된 제네바협약은 다음과 같은 범주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을 명시한다:

- 제1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부상자 및 병자
- 제2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
- 제3협약: 전쟁포로
- 제4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상기 4개의 제네바협약은 가장 널리 인정되는 국제 조약이다. 이들은 사실상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준되었다.

적대행위에 적용되는 규칙들은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헤이그협약은 충돌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투방법 및 수단을 제한한다. 그리고 적절하고, 허용되는 무기 및 군 전술의 사용을 명시함으로써 무력충돌에서의 군사 작전 수행을 규제한다.

개인의 보호 및 적대행위와 관련된 규칙들은 모두 통합되어 1977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에 대한 2개의 추가의정서에 발전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수의 조약들은 상기 조항들을 보완한다: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1954년), 특정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 (1980년), 대인지뢰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 (1997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998년), 제네바협약 제3추가의정서 (2005년). 제3추가의정서는 적십자사, 적신월사 및 적사자태양과 더불어 하나의 추가적인 표장 (일반적으로 "적수정"으로 명명)을 채택한 것이다.

1.2.2. 인권법

인권법은 개인 또는 단체가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에 근거하여 당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보호, 행위 또는 혜택에 대한 일련의 원칙과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는 국제 인권법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다:

-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48년)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4년)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년)

이외에도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 인권헌장과 같은 지역적인 법률문서는 범세계적인 법률체계와 더불어 독자적으로 국제적인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생명권은 최고의 인권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효과적인 보장조치가 없다면 여타 모든 인권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항, 제9조 1항과 지역 법률문서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4조, 제6조; 미주 인권협약 제4조 1항, 제7조 1항; 유럽인권협약 제2조, 제5조 1항)에서도 재강조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약의 제9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법집행의 책임을 지는 전문가들은 특히,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 (CCLEO, 1979년)과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BPUFF, 1990년)을 숙지하여야 한다. 동 문서들은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일명 "연성법 (soft law)"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들은 **법과 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유용한 지침**이 된다.

1.2.3. 관습국제법

조약은 일반적으로 비준을 통해 해당 조약에 구속 받기로 동의한 국가들에 한하여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서면상의 의무는 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행에 근거를 두는 관습법**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된다. ICRC는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관습법의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연구 수행을 위임 받았다. 그리고 과거 8년간의 방대한 조사 끝에 오늘날 관습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161개의 규칙들을 확인하였다.

4개의 1949년 제네바협약은 전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았지만 1977년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무력충돌법 관련 기타 조약들은 전세계적인 비준을 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비준하지 않은 조약에 포함되는 규칙과 원칙 다수는 관습법의 일부로 (예컨대, 적대행위 및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대우와 관련된 다수의 규칙), 해당 **국가가 어떠한 조약을 비준하는지 또는 비준하지 않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무력충돌법의 관습 규칙의 상당수는 조약법 보다 훨씬 자세하게 **비국제적 무력충돌**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하는데, 특히 적대행위에 적용되는 규칙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조약법은 비

국제적 무력충돌시 민간 물자에 대한 공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관습국제법은 이러한 행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력충돌은 비국제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돌상황에 적용되는 조약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본 책자 3.1장 참고). 그러나 ICRC의 연구에 따르면 무력충돌법의 관습 규칙 대다수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 적용된다**. 즉, 이러한 규칙들은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되기 때문에 동 규칙들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상황이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무력충돌의 관습법은 충돌 당사자들이 **연합군**을 결성할 때 특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대의 무력충돌에서 국가들은 종종 연합군을 결성한다.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동일한 조약에 따른 동일한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국가들이 동일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무력충돌의 관습법은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공통의 교전규칙을 작성하거나 목표물 설정 정책을 채택하는데 최소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습법규는 연합군의 개별 구성원이 갖는 조약에 따른 의무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Jaime Razuri/AFP

2.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시 법 집행 활동은 경찰 또는 보안군이 담당한다.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시 군 병력이 투입되는 경우,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당국의 명령을 따른다. **법 집행의 임무를 맡은 공무집행자와 조직은** 직위 및 조직의 설립 목적에 관계없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a) 공공질서와 안전 유지;

b) 범죄 예방 및 수사;

c) 모든 유형의 비상사태 지원.

무력충돌법은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때에는 해당 국가가 갖는 인권 관련 의무가 적용된다.

2.1. 집회 및 시위

2.1.1. 정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집회 및 시위** (또는 기타 유사 행위)와 같은 사건은 개인과 집단의 자유에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폭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띄고, 기억되는 사건들은 바로 (시위자들 간의 혹은 시위대 간 충돌 내지 시위대와 법 집행관 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2.1.2. 적용 법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같은 국제인권법 관련 법률문서에 명문화된 다수의 **권리와 자유**는 집회, 시위 및 기타 유사한 행위에 적용되며, 모든 사람들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간섭 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1항)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2항)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1항)

그러나 상기 권리의 행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권리의 제한이 적법한 경우
- 다음을 위해 권리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의 존중
  -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윤리의 보호(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3항, 제21조, 제22조 2항)
- 권리의 제한이 비례적인 경우 – 즉, 국가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해야 한다.

상기 경우 외에 "공공의 안전"을 합법적인 사유로 하여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2항 참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는 모든 사람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나 동 조항 제2항의 마지막 문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수의 국가들은 "무기를 소지하는" 병력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의 정치적인 활동**을 제한한다.

2.1.3 실제 적용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불법 집회의 경우, 매우 복잡한 임무이다. 법 집행관에게도 소요사태는 무서운 경험일 수 있으며, 분노에 찬 또는 심지어 무기를 소지하였을 수 있는 군중에 대항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군중을 진정시키거나 해산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기강이 확고한 전문 병력이** 필요하다. 이는 경찰 또는 보안군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아닌 적군에 대항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군 병력에게 이는 훨씬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군대는 일반 군중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지도 않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군중 통제 임무를 어떠한 병력에 맡기던지 그 이전에 당국은 **국내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입법은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 병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고, 동 임무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민간정부와 군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군대를 포함하여, 법집행관은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회복하는데 있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본 문서의 5.1.1장 참고);
-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사망자에게는 예우를 다하고 그 신원을 확인한다;
-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회복하는 당국에 의해 체포 또는 억류된 자들을 공정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한다.

무력사용과 관련된 법집행관들을 위한 **표준업무절차**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 업무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전규칙**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담당자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실무 연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명령체계와**

규율 (제재조치 포함)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감독과 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관련 **장비**, 특히, 보호장비와 통신기기는 상황을 통제하고, 폭력사태를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규율 체계에서 적절한 훈련을 받고, 적합한 장비를 갖추었으며, 적절한 명령을 받은 법집행관들만 실전에 투입되어야 한다.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와 같은 사건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 법 집행 당국은 집회를 조직하는 이들과 집회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미리 논의하여 집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얼굴 없는 군중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한다면, 이는 집회 참가자들과 법집행관들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특정 개인들만 겨냥하는 **정밀대처 행위**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않고, 이들은 방해 없이 집회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 국내소요 및 긴장사태

2.2.1 정의

"국내소요 및 긴장사태"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적절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법률문서는 없다. 1949년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제1조 2항은 "무력충돌이 아닌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행위**와 같은 국내소요 및 긴장사태"를 언급하고 있다 (강조는 필자). 이러한 몇 개의 예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구체적인 정의를 찾을 수 없다.

사실상 소요는 일반적으로 폭력이 수반되는 공공질서 위반 행위를 의미한다. 국내 긴장사태의 경우 폭력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는 주로 이러한 긴장사태가 혼란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파를 집단 검거하고, 일부 인권을 정지하는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2.2.2. 적용 법률

국내소요 및 긴장사태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법 집행기관에 관련된 인권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이 갖는 자신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
- 자의적 체포 또는 억류의 금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의 금지;
- 의견을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결사의 자유.

국내법에서 국가안보, 공공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조치**를 허용하는 경우, 비상조치의 적용은 자의적이거나 또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는 국내소요 및 긴장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동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합법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

2.2.3. 실제 적용

개별적인 사건 (집회, 시위, 폭동, 기타 고립적인 폭력사태)들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 종합하여 분석했을 때 소요 또는 긴장사태로 볼 수 있는 다소 일관성 있는 **특징**들이 있는지 여부는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점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안전 및 법과 질서의 유지에 있어 정부 당국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소요 및 긴장사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정부로 하여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하는 상황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아래 참고).

소요 및 긴장사태가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집행 관련 문제는 관련 법 집행기관의 조직과 장비 및 법집행관들의 훈련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소요 및 긴장사태에서 법 집행기관이 취하는 조치는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소요 및 긴장사태의 주동자 및 지속적인 참여자를 향한 합법적이며, 비자의적이고, 정확한 조치는 다시 통제권을 **장악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치, 비합법적,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안전을 더욱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며, 상황 악화에 대해 최소한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2.3. 비상사태

2.3.1. 정의

국내소요 및 긴장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정부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될 때에만"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강조는 필자).

2.3.2. 적용 법률

상기 언급된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인권법을 구체화한 **국내법**이 비상사태 시 적용된다. 또한, 무력충돌 시 비상사태가 선포 또는 유지되는 경우에는 무력충돌법 역시 적용된다.

대부분의 **헌법**은 국가 원수나 정부가 전시 또는 기타 비상사태 시 국회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외적인 조치 (기본권 제한 또는 정지 포함)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비상조치 조항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은 국가가 자국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권 국가로서의 적법한 권리의 인정과 인권 존중 사이에 균형을 맞추도록 임무를 한다.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 법률문서도 비상사태를 인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근거로 공공의 비상사태만 언급하지만 유럽인권협약 제15조, 유럽사회헌장 제15조, 미주인권협약 제27조는 전쟁도 언급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권헌장에는 비상사태 조항이 없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허용하는 권리의 감손(減損)은 국가의 특정한 의무를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감손 시에도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며, 이러한 권리의 감손은 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적인 인권의 정지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여러 **기준이** 적용된다.

- 비상사태는 비상사태 선포 권한이 있는 국내 정부 기구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비상사태 대응조치의 정확한 물적, 지역적, 시기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사실상의 인권침해 행위와 인권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사후 시도를 예방할 수 있다.

- 권리 감손 조치는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

- 권리 감손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오로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3항은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 및 통지는 원활한 국제적인 감독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부 권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손될 수 없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2항은 **감손할 수 없는 권리 조항**을 명시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생명에 관한 권리 (제6조)
- 고문의 금지 (제7조)
- 노예 및 예속의 금지 (제8조)
-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의 금지 (제11조)
- 형사법 소급효 금지 (제15조)
-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제16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8조)

상기 권리는 비상사태 하에서도 정지 또는 감손될 수 없다. 이들 각 조항은 모든 **경우**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감손 불가능한 권리를 보호•존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상사태 선포를 이용할 수 없다.

2.3.3. 실제 적용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활동하는 모든 병력은 비록 일부 인권이 정지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무력의 사용에는 여전히 개별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문서의 2.1.3항, 2.2.3항 및 5장을 참고하시오.

CDIC/Reuters

3. 무력충돌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따르면 “국가들간에 서로 무력을 쓰거나 정부당국과 무장집단간 또는 국가 내 무장집단간 장기간 무장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Prosecutor v. Dusko Tadic, Case No. IT-94-1-AR72,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 for Interlocutory Appeal on Jurisdiction, 1995년 10월 2일 (ICTY Appeals Chamber), para. 70).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대가 군사작전을 수행하지만 경찰 또는 보안군 역시 군사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유지된다.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은 무력충돌 시와 마찬가지로 평시에도 적용되지만 (물론 일부 권리의 감손이 있을 수 있음), 무력충돌법은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여부에 관계없이 무력충돌 시에만 적용된다 (평시 적용되는 준비와 실행 조치는 별론으로 함). **무력충돌법**은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적대행위를 규제한다.

3.1. 비국제적 무력충돌

3.1.1. 정의

일반적으로 비국제적 무력충돌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 정부 무장집단이 그들간 또는 정부에 대항하여 투쟁함;
-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를 초과하는 정도의 강경한 수준;
- 지속적이고, 계획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적 조직이 있음.

또한, 무장집단은 **영토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가 이들 무장집단의 지위 변경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어떠한 법률문서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아래 참고).

3.1.2. 적용 법률

비국제적 무력충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무장집단이 특정 영토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와 이러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의 구분에 따라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결정된다.

무력충돌법의 일부 조항만이 특별히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적용되는 대부분의 법률체계는 무력충돌에 대한 관습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무력충돌법 관련 법률문서가 적용될 수 있다:

- 제네바협약 공통조항 제3조 (1949년);
-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4조 (1954년);
-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의 제1의정서 내지 제4의정서 (수정 조항 제1조) 및 제5의정서 (1980년);
-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및 폐기에 관한 오타와협약 (1997년)

-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2의정서 (1999년);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년);
-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3추가의정서 (2005년).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조항 제3조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다. 동 조항은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무장집단이 특정 영토에서 최소한의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률문서 외에도 공통조항 제3조의 내용을 보완•발전시킨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가 적용된다. 특히, 제2추가의정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본적 권리와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
- 자유가 제한된 개인에 대한 자세한 조항;
- 적대행위의 종료시 가능한 최대의 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 무력충돌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기소와 처벌 관련 조항;
- 부상자, 병자, 난선자 및 의무부대, 수송, 의무요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항;
- 관계 민간인의 안전이나 긴급한 군사적인 이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주민의 강제이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 민간주민 보호에 대한 자세한 조항.

상기 명문화된 의무는 법률로 인정되는 일반 관행에 근거한 **관습법**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된다.

권리 감손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완전히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체포나 억류된 자). 또한, 보장된 인권의 감손은 무력충돌법에 따른 해당 국가의 의무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3.1.3. 실제 적용

제네바협약 공통조항 제3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적대행위에의 "직접" 또는 "실질적" 참여의 개념**은 무력충돌법의 다수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간인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는 기간에 한해 공격으로부터 제외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체포되는 경우 동 민간인을 억류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약 또는 추가의정서들은 "적대행위에의 실질적 참여"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간접" 참여와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도 명시하지 않는다. 간접 참여로는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제외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직접 참여의 지속기간을 비롯하여, 언제부터 구체적 공격을 준비가 시작되는데 또는 언제부터 군사교전으로부터 철수하여 더 이상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정의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다.

현대의 충돌행위는 "적대행위에의 직접 참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최첨단 전투 기술사용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과 남용), 전통적인 군사 기능을 민간 업체들로부터 아웃소싱, "대테러 전쟁" 등으로 인해 민간활동과 군사활동 간의 경계가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인지,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판단과 결정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ICRC는 TMC Asser 연구소와 공동으로 적대행위에의 직접 참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동 개념의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관련 연구를 개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학계, 군사, 정부, 비정부 및 인도주의 기구를 대표하는 약 40여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에 "국제인도법 하에서 적대행위에의 직접 참여 개념의 해석에 관한 지침 (Interpretive Guidance on the Notion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under IHL)"을 발표할 계획이다.

비록 비국제적, 국제적 무력충돌에는 각기 **다른 법적인 근거**가 적용되지만, 이 두 상황 모두 군대의 무력 사용 시 예상되는 행동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국제적 무력충돌을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전쟁포로 지위는 국제적 무력충돌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특정 인물을 체포하는 기관이 **취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은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취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특히, 모든 경우에 있어 그 어떠한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인 대우를 하여야 한다). 포로가 전투지역을 벗어나 안전하게 이송된 경우에만 충돌상황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한 규정이 적용되며,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포로로 체포된 적군 전투원은 전쟁포로 수용소에 억류되고, 실질적 적대행위의 종료 시 석방된다. 그러나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직접 참여하여 체포된 자들은 억류되어 국내 형사법에 따라 형사소추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 군 관계자가 극단적으로 상이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들은 두 상황 간의 차이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 헌병 등의 군 관계자는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3.2. 국제적 무력충돌

3.2.1. 정의

국제적 무력충돌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발생하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대립으로, 당사국 일방이 그 전쟁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적 무력충돌로 인정된다.

특정 상황을 국제적 무력충돌로 인정함에 있어 **무력의 강도**, 군대조직 또는 영토 통제권 측면에서 요구되는 **최소 기준**이 없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 무력충돌에는 낮은 강도의 전투 (또는 전투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적군 영토에의 소규모 침입 또는 상대국의 저항이 없는 침략도 포함될 수 있다.

3.2.2. 적용 법률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 법령은 30개 이상이 된다.

적대행위에 직접 (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자들(부상자, 병자, 난선자, 전쟁포로, 사망자, 민간 인,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을 돌보는 자)의 보호와 관련된 1949년 4개 **제네바협약** (제1협약 내지 제4협약)이 적용된다. 또한, 제4협약은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점령에 무력 저항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4개의 제네바협약 모두에 포함되는 공통조항 제2조).

1977년 제1**추가의정서**는 1949년 제네바 제협약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제적 무력충돌 및 점령에 적용되고 (동 의정서 제1조 3항), “유엔헌장 및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에 의해 보장된 민족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식민통치, 외국의 점령 및 인종차별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동 의정서 제1조 4항).

기타 관련 국제법은 다음의 상황을 규제한다: 육지에서의 적대행위 (1907년 헤이그 제4협약 및 관련 부속 규정),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1907년 헤이그 제10협약), 문화재 보호 (1954년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및 1954년과 1999년 의정서), **다양한 종류의 무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1925년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1972년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및 5개의 관련 의정서, 1993년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1997년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중립법규** (육전에서의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1907년 헤이그 제5협약, 해전에서의 중립국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1907년 헤이그 제13협약).

관련 협약, 의정서 또는 기타 국제협정에서 다루지 않거나 동 협정이 파기되는 경우, 민간인 및 전투원은 확립된 **관습, 인도주의 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와 권한 하에 놓인다 (제1의정서 제1조 2항; 제네바 제1협약 제63조; 제네바 제2협약 62조; 제네바 제3협약 제142조; 제네바 제4협약 제158조).

3.2.3. 실제 적용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2항에 따르면,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제3협약 제33조에 규정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제외)은 전투원이다. 즉, 그들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전투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비전투원이며, 이들은 적대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며, 군사작전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의정서 제51조).

전투원이 아닌 자 (의무요원과 종교요원을 제외)들은 **민간인**으로 분류된다. 특정 개인이 민간인인지 여부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해당 개인은 민간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무력충돌법은 **민간인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인은 "전투원의 특권"이 없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형사소추를 면제받지 못한다. 다만,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로부터 군대 수행 인원으로 인가를 받은 민간인은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제3협약 제4조 4항, 4조 5항).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 제4 제네바협약은 충돌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국민이 아닌 자들이 충돌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권력 내에 있는 경우, 이들 민간인의 보호와 관련된 규칙들을 명시한다. 제1추가의정서는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을 명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문서의 3.1.3장을 참고하시오.

3.3. 국제화된 무력충돌

3.3.1. 정의

특정 국가의 **내부 무력충돌**에 **단일 또는 복수의 외국 군대**가 개입하는 경우 국제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 외국 국가는 충돌지역에 자국 군대를 파견하거나 충돌이 발생한 국가의 군대에 전체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개입한다.

3.3.2. 적용 법률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무력충돌이 국제화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다음의 **네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충돌상황에서 상호 대립하는 집단을 각각 지지하며 개입하는 두 개의 국가 간 관계에는 국제적 무력충돌법이 적용된다.

2. 무력충돌 발생국가의 지방정부와 동 국가 내 반정부집단을 지지하며 개입하는 외국 국가 사이의 관계에는 국제적 무력충돌법이 적용된다.

3. 무력충돌 발생국가의 지방정부와 동 국가 내 반정부집단 사이의 관계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법이 적용된다

4. 반정부집단과 무력충돌 발생국가의 지방정부를 지지하며 개입하는 외국 국가 사이의 관계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법이 적용된다.

3.3.3. 실제 적용

본 문서의 3.1.3장과 3.2.3장을 참고하시오.

GIAN Luigi Geurcia/AFP

4. 평화지원활동

4.1. 정의

평화지원활동은 유엔이 승인 또는 수행하는 모든 **다국적 활동**을 포함한다. 승인된 평화지원활동은 국가 또는 지역적인 조직이 수행할 수 있다. 평화지원활동은 **충돌예방, 평화유지, 평화강화 또는 충돌 후 평화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4.2. 적용 법률

무력충돌법은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즉 무력충돌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무력의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동 기간 동안 평화지원활동에 적용된다. 무력충돌법의 적용 여부 (전쟁법규 또는 전시에 있어서 무력사용에 관한 규칙)는 군사활동의 합법성 (전쟁에 대한 권리 또는 무력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한다. 1999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군에 적용되는 무력충돌법의 기본원칙과 규칙들을 명시한 공고문 (ST/SGB/1999/13)을 발표하였다.

또한, 평화지원활동은, 특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을 취하는 경우, **인권**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유엔과 유엔산하기구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엔의 이러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증진이다. 그러므로 평화지원활동에 관계된 모든 민간 및 군사 기구는 인권을 반드시 존중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파견하는 다양한 파견부대 역시 자국의 국내법을 비롯하여, 평화지원활동 임무에 상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국이 갖는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주둔국의 **국내법**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그대로 적용된다.

4.3. 실제 적용

평화지원활동은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군대가 파견된 상황의 법적인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규칙들이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해당 임무, 교전규칙 (특히 무력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들을 명시한 것), 군대지위협정 (주둔국에서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은 단지 그러한 상황을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평화지원활동은 그 특성상 다국적이기 때문에 **법적인 상호운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다수의 군대 파견국들은 모두 동일한 법률문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법적 의무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자국의 법적 의무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조약 또는 협약을 준수하는데 있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CCLEO) 또는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PUFF)과 같은 소위 "연성법"적인 법률문서가 제공하는 지침의 효력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특정 교전규칙에 대해서는 자국의 국가적인 예외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습국제법**은 군대 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군대 전체와 다양한 파견부대에 적용되는 기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공통 교전규칙을 작성하거나 목표물 설정 정책을 채택하는데 최소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관습규칙이 개별 파견국이 갖는 조약의 의무를 약화하지는 않는다.

Stringer/Reuters

5. 특수한 문제들

무력충돌,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및 평화지원활동과 같은 상황을 그 강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의 순서에 따라 접근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유형의 상황이 항상 다른 상황들에 앞서 또는 뒤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법 집행, 체포 및 억류, 무력의 사용과 같은 일부 행위는 모든 유형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5.1. 법의 집행

법 집행 활동은 일반적으로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시 또는 그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법의 집행은 무력충돌 및 평화지원활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5.1.1. 정의

법 집행은 다음의 **기본적인 책임**들을 포함한다: 공공질서 및 안보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조사, 각종 지원 활동. 또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법집행관은 다음의 **기본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체포, 억류, 수색 및 압수, 무력 및 화기의 사용 (아래 참고).

"'**법집행관**'이라는 용어는 임명 또는 선출된 법무 관련 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력 특히, 체포 또는 억류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제복의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군 당국이 경찰력을 행사하거나 국가 보안군이 경찰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경우, 법집행관의 정의에 이러한 경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자들이 포함된다"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 제1조). 그러나 군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이 되지 않고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임무를 군대에 맡기는 경우, 법 집행의 수준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5.1.2. 무력충돌 및 평화지원활동

일반적으로 **무력충돌** 상황은 국민들의 삶과 공공안전 및 공공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야기한다. 또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국내 또는 국경을 넘어 피난을 가기도 한다. 현대의 무력충돌은 수백만 명의 실향민과 피난민을 낳는다. 법집행관들은 이렇듯 특히 취약하고 각종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향민과 난민들의 권리와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기존의 법집행기관이 그들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지 또는 이들의 임무를 군대에 이양할지 여부는 개별 국가가 결정하여야 한다. 훈련과 장비 및 외형적인 측면에서 과연 군대에 법 집행 및 법과 질서의 유지 임무를 부과하는 것에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법 집행 임무는 – 비록 이견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 가능한 일반적인 법집행기관의 권한 하에 두어야 한다.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는 법집행기관의 민간인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3항에 따르면, 충돌당사국은 준군사적 또는 무장한 법집행기관을 군대에 포함시킬 경우 타충돌당사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집행관은 전투원 지위를 갖게 되며, 전투원 지위를 갖는 자에게 적용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제4 제네바협약 제54조는 점령국은 **점령지역** 내의 공무원 또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직무 수행을 기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 공무원 또는 법관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적 또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당국의 부재 시 **평화지원**군은 주둔국에서 법과 질서 유지 임무를 맡을 수 있다.

5.2. 무력 및 화기의 사용과 적대행위

생명에 대한 권리가 매우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법집행**기관이 무력 또는 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극단적인 조치이다. 물론, 무력충돌 상황은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무력사용의 근거가 되는 원칙, 특히, 필요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일부 원칙은 법의 집행과 무력충돌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5.2.1. 법집행기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CCLEO)과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PUFF)**은 비록 조약은 아니지만 무력 및 화기의 사용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한다.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은 기본 인권 및 자유에 대한 조항을 준수하는 법집행 관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들이 법집행관의 적절한 역할을 보장, 증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원칙들을 명시한다.

무력 및 화기 사용의 근거가 되는 **기본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적법성의 원칙;
- 예방의 원칙;
- 필요의 원칙;
- 비례의 원칙.

법집행관은 오직 적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한 때에** (필요의 원칙), 적법한 목표 달성의 중요성 측면에서 (적법성의 원칙), 무력의 사용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한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은 무력과 화기를 사용함에 있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고, 범죄의 심각성과 달성해야 하는 적법한 목표에 비례하여 행동해야 한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4호 및 제5호). 이들 법집행관은 **적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직 필요한 정도의 무력만 사용할 수 있다.

적법한 법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화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따라서 필요 및 비례의 원칙은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9, 10, 11호에서 보다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법집행관은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을 상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급박한** 살상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타인의 보호;
-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관련된 특별히 중대한 범죄 발생의 예방;
- 상기 위협을 가지고, 법집행관의 권한에 저항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이러한 자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보다 덜 극단적인 조치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되어 의도적으로 화기를 치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9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기의 사용은 매우 극단적인 조치이다. 이는 **화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법집행관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동 규칙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방의 원칙).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10호에 따르면:

동 원칙 제9호가 명시하는 상황에서, 법집행관은

- 자신이 법집행관임을 밝힌다. **그리고**,
- 화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경고하고, 동 경고에 복종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만**,
- 동 절차로 인해 법집행관 본인이 부당하게 위험에 빠질 경우, **또는**
- 타인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또는**
- 당해 사건의 정황상 동 절차가 명백히 부적절 또는 의미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강조는 저자).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무력 및 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집회와 시위를 "경찰이 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불법적이지만 비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하는데 있어, 법집행관은 무력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력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13호).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하는데 있어, 법집행관은 보다 덜 위험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동 원

칙 제9호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14호, 강조는 필자).

동 원칙 제14호는 화기의 적법한 사용을 허용하는 **추가적 상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동 원칙은 원칙 제9호에서 명시된 조건들 하에서만 화기의 사용이 허용됨을 재강조한다 (즉, 급박한 살상 위협이 있는 경우). 폭력적인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 (대규모 군중, 혼란 및 무질서)과 집회 장소에는 있지만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원칙 제14호는 집회의 해산을 목적으로 폭력적인 군중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화기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5.2.2. 무력충돌시의 적대행위

무력충돌 시 무력의 사용은 **다양한 무력충돌법 문서들**, 특히,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및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와 같은 법률문서에서 명시 또는 제안된 다수의 원칙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즉,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력이 필요한 경우, 특히, 목표물이 적법한 군사 목표물인지 확인하고,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에 우발적으로 과도한 상해를 야기하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 필요의 원칙에 따라 적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항복을 위해 무력충돌법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도의 무력만 사용될 수 있다.

- 구별의 원칙에 따라, 충돌당사자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여야 하고,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물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오직 전투원 및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공격할 수 있다.

- **제한**의 원칙에 따라, 전투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다수의 법률문서는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성질의 무기 또는 수단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비례**의 원칙에 따라 예상되는 부수적인 민간인 살상 및 민간물자 피해 규모와,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에 과도하게 부수적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은 금지된다 (본 문서 5.2.1장의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참고).

5.2.3. 평화지원활동

평화지원활동에서도 상황에 따라 군대는 군대 자신의 방어(自衛)를 위해서 또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무력과 화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군사적 임무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의 법적 지위에 따라 앞서 언급한 규칙들이 적용된다.

5.3. 체포 및 억류

5.3.1. 체포

"체포"란 범죄 혐의 또는 당국의 조치로 인해 특정 **개인을 검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집행관의 체포 결정에 대한 재량권은 **적법성 원칙**, **필요의 원칙** 및 **자의성의 금지**에 따라 제한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1항). 동 조항은 체포의 이유 및 절차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법률 자체가 자의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주어진 상황 하에서 법의 집행도 자의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체포 시 피체포자에게 체포 이유를 통보하고,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 후 피체포자를 법관 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즉시 회부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개시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억류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억류의 **적법성**에 대해 지체 없이 판결하고, 억류가 적법하지 않는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여성과 미성년자의 특수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들이 있다.

5.3.2. 구금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와 싸우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 온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 박탈을 금지하는 대신 국제법은 자유의 박탈이 **적법하고**, **비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련의 규칙과 지침들을 제시한다. 모든 피구금자 (조사 및 재판을 기다리는 자) 또는 수감자 (유죄 판결 후)는 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을 제외하고 자신의 인권을 계속 보유한다. 피구금자와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엔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보완하는 여러 법률문서를 발표하였으며, 여성 (특히, 임산부와 수유부)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들을 포함하였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항 (강조는 필자)). 구금 자체를 목적으로 또는 조사 절차나 사법 집행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구금장소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조치의 실행은 금지된다. 동 조항은 구금 또는 감금 기간에 발생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와 형벌**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는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국제관습법의 일부이며, 다수의 인권 관련 법률문서와 무력충돌법에서 명문화되어 있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고문의 금지는 법 집행 또는 전투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적용되며, 구금 및 감금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고문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

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

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

무력충돌법에서 고문은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의미는 국제법에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로 이해되며, 고문과 달리 학대의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학대의 목적이 없어도 고문의 개념에 해당됨.)

5.3.3. 무력충돌시 억류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4개 제네바협약 공통조항 제3조가 적용된다. 또한, 적용 가능할 때 (예컨대, 영토 통제권을 확보한 때),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추가의정서는 공통조항 제3조와 마찬가지로 피억류자들의 인도적인 대우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 (제4조)과, 무력충돌과 관련된 이유로 인해 수용, 구금 또는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 자들의 대우에 대한 최소 보장 조항 (제5조) 및 무력충돌과 관련된 형사범죄의 소추 및 처벌에 대한 사법적 보장 (제6조)을 명시하고 있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전쟁포로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 무력충돌 시, 일반적인 억류 또는 자유의 박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다. 적대당사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모든 전투원은**전쟁포로**로 인정되어

야 한다. (제1추가의정서 제44조 1항). 제네바 제3협약 제4조는 전쟁포로 지위로 대우받는 자들을 정의하고, 억류 기간 동안 포로의 대우에 대한 규칙들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전제는 전쟁포로는 항상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 제네바협약 제13조).

민간인, 특히 외국인은 무력충돌 시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수용 조치**될 수 있다. 수용은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유(해당 개인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처벌이 아니다. 피수용자 **대우와 관련된 규제**는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제4 제네바협약 제79조 내지 135조 참고).

무력충돌의 영향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한 자 (체포, 억류/구금, 수용)는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75조에 명시된 기본적인 보장의 보호를 받는다.

5.3.4. 평화지원활동 시 억류

외국군대에 적용되는 군대**지위협정**은 일반적으로 억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평화지원군이 억류한 자들을 민간당국에 이송하기 전에 이들을 단기간 억류하거나, 또는 주둔국의 붕괴로 인해 적절한 국가 체계가 부재한 경우 이들을 장기간 억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피억류자들의 지위와 대우는 당해 상황의 법적 성격과 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Anja Niedringhaus/AP

6.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전쟁 및 국가 내부폭력의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조직이다. ICRC는 충돌상황에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이 수행하는 국제 구호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강화, 증진하여 고통의 예방을 추구한다. 1863년에 설립된 ICRC는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모태이다.

6.1. 주요 내용

6.1.1. 법적인 토대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시 ICRC는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발의권에 따라 ICRC는 ICRC가 수행하는 활동이 해당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그 어떠한 관련 당사자에게도 특정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동 국가에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무력충돌 이외의 사태 시 무력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데 있어, ICRC는 국제인권법 관련 법률문서의 모든 범위를 활동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 ICRC는 폭력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핵심 규칙들을 참고하며, 이러한 규칙들은 비록 그 수는 적지만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도 ICRC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였고, 4개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에 명시된 발의권을 갖는다. ICRC는 특히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억류 상태를 확인하고, 이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들 피억류자들을 방문하는 활동 등을 전쟁당사국에서 수행할 수 있다. 공통 제3조는 이는 "충돌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적 무력충돌 시 1949년 제네바협약 및 1977년 추가의정서 체약국들은 제3협약 제126조, 제4협약 제143조에 따라 ICRC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 ICRC의 발의권은 제네바협약 공통조항 제9조(1협약)/제9조(제2협약)/제9조(제3협약)/제10조(제4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제81조는 충돌당사국은 충돌 희생자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협약 및 동 의정서에 의하여 맡겨진 인도적 기능을 ICRC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자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의 모든 편의를 ICRC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1.2. 주요 활동

ICRC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전쟁포로 및 피구금자 방문
- 실종자 수색
- 헤어진 가족들간의 연락 주선
- 가족 상봉
- 안전한 식수, 식량, 의료 지원 제공
- 국제인도법 존중의 증진
- 국제인도법 준수 모니터링
- 국제인도법 발전에의 기여

ICRC의 활동은 전적으로 국가 및 각국 적십자사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또한, 세계 각지에 있는 ICRC 사무소는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사태의 발생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6.2. 실제 적용

ICRC는 군대 및 경찰 병력이 활동하는 다양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군과 경찰은 ICRC와 동일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군 또는 경찰 지휘관은 ICRC의 일부 주요 기능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6.2.1. 원칙 있는 행동과 관계 당사자들과의 대화

제네바협약에 따라 인도주의적 활동은 **공평**해야 하며, 사람의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성별, 출생, 부 (富) 또는 기타 사항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오로지 개인의 신념으로 인해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제사회가 고립시키고자 하는 단체의 통제 하에 있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주민도 버림받아서는 아니 된다.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바로 니즈이며, 재난 상황의 긴박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순서가 결정된다.

정치 지도자와 또한 군사 지도자는 ICRC의 활동은 **원조뿐만 아니라 보호 활동**도 포함되며, 구호와 보호 활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수감자들의 대우와 구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감자를 방문하고, 무력충돌 상황 속에서 무력충돌법 위반의 희생자인 개인 또는 사회를 위하여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역시 인도적 활동의 일부이다. ICRC 대표들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충돌상황을 유발한 책임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충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가까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ICRC 대표들은 군 관계자에서 경찰, 준군사단체에서 반란군, 평화지원군에서 민간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 소지자들과 만나고, 협상하고, 협의한다.

모든 충돌상황에서 충돌당사자들은 이면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도주의적 단체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하는 것이 물론 어렵긴 하지만,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보호 및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국가로부터의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ICRC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와의 대화를 거

부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ICRC가 충돌당사자들 사이에 도덕적 동일성 또는 특정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공통 제3조 참고). **중립성**은 최종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목적 그 자체가 아니다. 즉, 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ICRC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은 바로 충돌상황에서 특정 당사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CRC는 인도적 기구와 군대 사이에 상호 건설적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고, 상호협의를 통해 양자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RC는 군사활동과 인도주의적 활동 사이에 실질적이며 외형적인 측면에 있어 확실한 구분이 유지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다. 그러므로 ICRC는 동일한 현장에 배치된 국제 군사임무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동시에 의사결정 및 행동에 있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2.2. 억류

억류장소를 방문하기 이전에 ICRC는 몇 개의 **표준적인 조건**을 관계당국에 먼저 제시해야 한다. ICRC 대표들은 다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ICRC의 임무에 해당되는 모든 피억류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억류된 모든 장소를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 ICRC 대표들이 선택하는 피억류자를 제3자의 개입 없이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방문시 ICRC 임무에 해당되는 피억류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관계당국으로부터 동 리스트를 수령, 확인하고, 필요 시 명단을 보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표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자주 이들이 선택하는 피억류자를 반복적으로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 피억류자와 가족 간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필요 시 긴급한 물자와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2.3. 법적 체계에 대한 존중

분명 법은 조약의 체약국인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지 ICRC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법의 내용을 보급, 교육, 훈련시키는 의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CRC의 장기적인 현장 경험과 세계 각국 정부와 무기 소지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덕분에, ICRC는 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지원 노력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또한, 단순히 법적인 규범에 대한 교육 실시로는 태도 또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ICRC는 과거 20여 년간 법의 **내용을 알리는 활동에서** 벗어나 각종 군사 교리, 군사 및 경찰의 훈련과 작전에 이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통합•반영되도록** 접근방법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왔다. 법률 체계는 일련의 일반적인 규칙들로 구성된 것으로, 때로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전투 또는 법집행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은 모든 작전적 수준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실무상의 작전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즉, 관련 법률은 작전 활동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종 교리, 교육, 훈련, 장비 및 제재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 수단 또는 체계로 통합되어 구현되어야 한다.

적용 법률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국가적인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이러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한 경우 ICRC는 언제나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외교회의 결의안 제21호는 ICRC가 무력충돌법 관련 지식 보급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의정서를 채택함) 또는 규약상의 발의권에 근거하여 지원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법의 내용을 구체적인 체계로 통합, 구현하는 과정에서 무기소지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ICRC는 제네바 본부에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현장에도 전문가 (과거 군대 또는 경찰 경력이 있는 전문가)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법의 해석, 작전적 의미 도출과 이를 토대로 하는 구체적인 결과 예측 등 무기소지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이 외에 새로운 전문 매뉴얼 작성, 교육과정 채택, 교리의 검토와 수정 또는 신장비 구입 등은 분명히 정부 당국과 무기소지자들의 책임이다.

Marko Kokic/ICRC

7. 참고문헌

7.1. 관련 ICRC 출판물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적법성 검토에 관한 지침서.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36조 이행 조치

Discover the ICRC.

Integrating the law (법적 통합)

Report on Expert Meeting on Multinational Peace Operations,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UN Mandate Forces.

To Serve & To Protect, in particular Chapter 7: Maintenance of Public Order; Chapter 8: Arrest; Chapter 9: Detention; and Chapter 10: Use of Force and Firearms.

7.2. 주요 약어 및 용어

AP I: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1977년 6월 8일 작성).

AP II: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1977년 6월 8일 작성.

AP III: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추가적인 식별 표장 채택에 관한 의정서 (제3의정서), 2005년 12월 8일 작성 .

BPUFF: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CCLEO: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

GC I: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1949년 8월 12일 작성.

GC II: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병자, 부상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1949년 8월 12일 작성.

GC III: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1949년 8월 12일 작성.

GC IV: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1949년 8월 12일 작성.

ICCP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전쟁 및 국가 내부폭력의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각 종 지원을 제공하는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조직이다. ICRC는 충돌상황에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이 수행하는 국제 구호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강화, 증진하여 고통의 예방을 추구한다. 1863년에 설립된 ICRC는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모태이다.

ICRC

0943/210T 06.2009